

의안번호 제88호

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서원 의원 외 4명
발의연월일	2019. 6. 13.

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⁸⁸호

발의연월일: 2019. 6. 13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: 구본선 이계천

김남충 최정숙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제3조)
- 나. 시민의 권리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항 (안 제4조 ~제7조)
- 다. 관계부서 협조, 오염측정망 설치, 경보발령 조치, 취약계층 지원, 시민감시단 운영,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~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4조, 제5조, 제7조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, 제3조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

나. 기 타

- 1) 조례안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2019. 6. 14 . ~ 6. 19.(6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논산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미세먼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가. 미세먼지(PM-10) :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μm)이하인 먼지
 나. 초미세먼지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μm)이하 인 먼지
 - 2. "대기오염 측정망"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.
 - 3. "미세먼지 취약계층"이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.
 - 4. "예보"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.
 - 5. "경보"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

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.

- 제3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민의 권리)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시민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
- 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미세 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 지 관리 종합계획(이하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 - 2.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 - 5.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종합계획의 지원)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대기오염측정망 설치·운영 등)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)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,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아동복지시설, 경로당등)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)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13조(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부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원 의원 외 4명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환경정책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장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- 제5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.
-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·훼손을 방지하고 오염·훼손 된 환경을 회복·복원할 책임을 지며,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□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대기오염물질"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·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·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의2. "유해성대기감시물질"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·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(生育)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·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"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(氣體狀物質)로서 온실가스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3. "온실가스"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 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, 메탄, 아산 화질소, 수소불화탄소, 과불화탄소, 육불화황을 말한다.
- 4. "가스" 란 물질이 연소·합성·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.
- 5. "입자상물질(粒子狀物質)" 이란 물질이 파쇄 · 선별 · 퇴적 · 이적 (移積)될 때,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·합성·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(固體狀) 또는 액체상(液體狀)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.
- 6. "먼지"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.<이하 생략〉
- 제3조(상시 측정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, 그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미세먼지"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.
 - 가.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(PM-10: 미세먼지)
 - 나. 입자의 지름이 2.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(PM-2.5: 초미세먼지)

- 2. "미세먼지 생성물질"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
 - 의 물질을 말한다
 - 가. 질소산화물
 - 나. 황산화물
 - 다. 휘발성 유기화합물
 - 라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
 - 〈이하 생략〉